

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214-1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4.
발 의 자 : 박선미 의원

1. 수정이유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·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수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회의록 작성·보관 조항 신설(안 제17조의제5항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의 모든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(종전의 제1호) 중 “조례·규칙을”을 “조례·규칙·훈령·예규를”로 한다.

1. “행정규제”(이하 “규제”라 한다)란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(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소관 행정규제(이하 “규

제”라 한다)”를 “시장은 소관 규제”로 한다.

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『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규제 기본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 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u><신 설></u></p> <p>1. “조례 등”이란 하남시의 <u>조례·규칙</u>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의 모든 <u>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행정규제”(이하 “규제”라 한다)란 <u>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(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.</u></p> <p>2. ----- <u>조례·규칙·훈령·예규를 ---.</u></p> <p>3. (원안 제2호와 같음)</p>

제3조(규제의 등록 및 공표) ① 하남
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소
관 행정규제(이하 “규제”라 한다)
의 명칭·내용·근거·담당부서
등을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7조(회의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3조(규제의 등록 및 공표) ① 시장
은 소관 규제-----

-----.

제17조(회의) ① ~ ④ (원안과 같
음)

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
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